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24
----------	-----

제출년월일 : '98.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외국인 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법과 형평을 기하고 공유지를 외국기업에 매각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골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조항 신설 (제18조의2)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신설(제18조의3)
-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제21조)
-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1,000분의10이상으로 함 (제22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 신설 (제22조의2)
- 수의계약 매각범위 세부적으로 규정 (제38조)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 (제38조의2)
- 관사관리제도의 축소 (제51조)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중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 제18조의2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하는때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화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 하는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시행자에게 매각 하는때

7.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가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중 “토지공시지가의”를 “토지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제6항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로 하고, 제7항을 삭제하며, 제7항 및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

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대부로 또는 시
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사업부문
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
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
업
-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
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다.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 제18조의3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제24조제4항중 “인근의 매매 실례조서, 사정정통단체, 조합”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frac{\text{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text{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times \frac{\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하는 총면적}}{\text{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경작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 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천재·지변 기타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35제2항중 “총괄재산관리부서”를 “공유임야관리전담부서”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수의계약 매각범위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동기를 하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예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 장려지역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사업장내의 재산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제50조중 “국장급등”을 “시설관리사등”으로 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등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22조의2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생략)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경우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교부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생략) ②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였을 경우 시장은 당해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100분의 30(도교부율에 따라 조정)을 시에 귀속시킨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귀속비율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귀속비율	제3조(관리사무의 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귀속비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세입조치도 귀속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법령상의 용어로 수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세입조치도 귀속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과 법령상의 용어로 수정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채시가표준액에 의한 가격 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생략) ②~⑤ (생략)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생략) 1. 보상금액은 부동산과채시가표준액에 의한 가격 이 500만원 이하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생략) ②~⑤ (생략)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부동산시가표준액에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부동산시가표준액에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1. 부동산시가표준액에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988호)에 용어 수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4988호)에 용어 수정
제9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증감 및 현재액 파악)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 및 변동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 시기를 명확히 규정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은 매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만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 시기를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제18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제100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투자유치지역이 되도록 함.	
〈신 설〉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등)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설립승인된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외국인투자촉진법 공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수준으로 공유재산도 허용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의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성하는 경우(예 : 세라믹단지, 화학산업단지등)대부·매각 허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19조(연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한 집중재산 상에연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지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차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시설물의 설치금지) 대부분한 집중재산 상에연구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또는지진철거한다는 규정을 계약서상에 명백히 규정하여 재산의 회수 활용에 차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삭 제>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중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지구안 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 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 각하는 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집중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지구안 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 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 위한특별 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에게 매 각하는 때	사	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 ○ 10년이내 연 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 업의 경우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사	유
5. 시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5. 시가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5. 배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배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단지의 지정용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배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배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단지의 지정용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배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배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단지의 지정용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배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배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단지의 지정용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배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기업전용단지·기술연구집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배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기술연구집단단지의 지정용단지 또는 배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때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발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때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97.5.15>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97.5.15>	7.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잠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 생활보호법에 의한 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95조제2항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때 3.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4.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5년이내 연8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로 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동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988호) 개정에 따른 용어 수정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분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9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대부분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공시지가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② 토지시가표준액				
③~⑤(생략)	③~⑤(생략)	③~⑤(현행과 같음)				○주거용 재산의 대부료를 1000분의 25로 정할 경우 무단점유등 불법건물에 대한 주거용 대부도 가능하다는 확대 해석이 가능하므로 직법 건물의 대부인 경우만 가능하도록 세부적으로 규정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한한다)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1000분의 3이상의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규정 불필요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50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⑦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신 설〉		⑦영 제8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⑧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지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산정	
〈신 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영 제92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사업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공유재산의 대부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만큼 국유재산과 동일한 규정 적용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고도기술 수반 사업분야로서 조세감면 수혜업체는 '97년 말 현재 전체 외국인투자기업의 약 8%임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나. <u>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 제 조업인 사업</u> 다. <u>고용창출 효과가 300명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u> 라. <u>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 인 외국인 투자사업</u> 마. <u>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u>	○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투자규모에 따른 지원책 마련 ※ 경기도의 외국인투자 실태 및 평균 규모 '97년말 현재 총 461개 외국인투자기업(가동기준)중에서 1000만불 이하의 소규모투자가 전체의 88%이고 제조업부문 평균 직접투자 금액은 약 400만불에 불과함. ○ 첨단기술 중심의 지원책에서 탈피하고 현재의 경쟁력과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고용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 ※ 경상남도내 외국인 투자기업(158개)의 고용인원 · 100명 미만 : 93개 업체(2,988명) · 100~500 : 55개업체(10,858명) · 500~1,000 : 8개 업체(5,629명) · 1,000~2,000 : 1개 업체(1,273명) · 2,000이상 : 1개 업체(2,875명) ○ 국가 및 지역경제 ·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지원 ※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부품 사용현황(96년말 현재) · 100% 국내부품사용 : 46% · 국내부품 사용 및 모기업 조달 병행 : 28% ○ 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책 필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바.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 기존의 국내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공장등 생산시설을 지역내로 이전해 올 경우에도 산업입지에 관한 지원책 필요 ※영국, 말레이지아, 멕시코 등의 경우에는 기존 투자업체가 당해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경우에 소요되는 이전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음 ○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추가투자를 촉진시켜 외국인 투자유치 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장증설에 필요한 산업부지 지원책 필요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계없이 신규투자와 동일하게 산업부지를 지원함으로써 추가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음 ※對韓 외국인투자의 동기 · 약 50%가 한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이 우려됨 · 제3국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수출증대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현	행	개 성 안	사 유
		라.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범위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범위의 공업매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외국인 투자금액이 비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나.고용창출 효과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다.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 투자사업 라.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범위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범위의 공업매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제18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지 내 또는 아파트형공장내의 공유재산	

현행	행	개정	안	사유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	제24조(토석채취료 등) ①~③(생략)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의 “매매실투자서” 조항 삭제 및 현실규정에 맞는 용어 사용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투자서사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투자서사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가격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⑤(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가격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⑤(현행과 같음)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현행 조해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비율에 따라 적용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건물의 부지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획이 명백한 토지를 말함. 다만,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와 부지면적이 광활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3배에 해당되는 토지를 건물 부지로 본다)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2.~3. (생략)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2.~3.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X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X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대부료 등의 납기에 대한 규정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규정과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1.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현행 제26항의 계약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경작목적의 대부등 후납의 경우에 한하여 대부기간 종료전에 납부하도록 명백히 함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 계약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친제·지번 기타 재해시 대부료 납기를 유예	
②계약종료의 년도에 있어서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시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년도 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년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②조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료율)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매대계약의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친제·지번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매대계약의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친제·지번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료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매대계약의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친제·지번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교환차액을 연체하였을 때 연체 이자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 ○제21조제1항제7호 개정시유 참고 -매대계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와 IMF시대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한 계약체제요구와 이에 따른 반환금 증가 등의 문제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함 ○친제·지번 기타 재해시 대부료 연체 문제를 해소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981. 4. 30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 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토지포 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 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 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 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토지단화된 부분에 관 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 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된 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동기를 하 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건물이 있 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 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 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위치하거 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 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 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시설 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 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의회의 동의 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된 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동기를 하 여야 한다.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 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건물이 있 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 미터이하, 시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이 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 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위치하거 나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 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 할 때에는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 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위임 ○ 현행 본문 조항을 제5항으로 합 ○ 건물점유자에게 매각 ○ 동일인 소유토지 사이에 점유시 매각			

현	행	개	정	안	사	유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 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기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원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 2(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가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을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신 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2.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재산</u> 3. <u>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u> 4. <u>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 공장용지내의 재산</u> ② <u>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 ③ <u>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u> 1. <u>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지역내의 재산</u> 2. <u>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30억달러 이상인 대형 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재산</u> 3. <u>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이 상인 공장용지내의 재산</u> ④ <u>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재산은 다음각호에 의한다.</u> 1. <u>외·투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 사업장내의 재산</u>			○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감면 필요 ○ 대형프로젝트에 의한 공장건설시 부대시설 부지로 감면 필요 ○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감면 필요 ○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부문(생명공학, 첨단전기, 전자부품, 정밀, 운송기계 등)의투자자시 공장용지 저가 제공 필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사업장내의 재산			○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1,000만 달러 이상 투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필요
			3.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1천명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지역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감면 필요
			4. 수출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사업내의 재산			
			5.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 조달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하는 경우에 대상재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장내의 재산			○ 50% 감면 사유보다 고용창출 효과가 낮으므로 차등화 필요
			2. 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공장용지내의 재산			○ " "
			3.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투자사업내의 재산			○ " "
			4. 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 긴전한 방향의 투자유치를 지향하고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채 강구 필요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국장급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등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 부시장, 국장급 등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과 등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 주택을 말한다.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제50조(정의)	○ 관사정비 계획에 따른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 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관사 : 국장급 관사 4. 4급관사 : 1급 내지 3급 이외의 관사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 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관사 : 국장급 관사 4. 4급관사 : 1급 내지 3급 이외의 관사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 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 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1급관사 : 시장 관사 2. 2급관사 : 부시장 관사 3. 3급관사 : 시설관리사·기타관사 등	○ 관사정비 계획에 따른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민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 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외주 치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납부 및 민제) ①관사를 사용한 자는 매월 봉급지급일 다음날까지 당해재산 평정 가액의 100분의 6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사외주 치달과 마지막달의 사용료 일수계산은사용한 날을 기준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민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민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사용료의 민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 관사정비 계획에 따른	